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6일

발의자 : 경수현, 소형준, 정병기, 강수진,
고영옥, 이용진, 박영섭, 김경이,
이일준, 정해숙, 진선아, 이인순,
양순임, 정윤주, 권영애, 이호건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주체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주체에게 CCTV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안 제9조)
- 나.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계획 수립 시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도시안전과

라. 입법예고 : 2023. 9. 26. ~ 2023. 10.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영 별표 6과 같다”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

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u><신설></u>	③ <u>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생략)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u>	<u><삭제></u>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 ----- ----- 하며, 점검 세부항목

④ · ⑤ (생략) 제9조(안전감시망) (생략) <u><신설></u> <u><신설></u>	은 영 별표 6과 같다. ③ · 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9조(안전감시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 사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 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	---